

일 러 두 기

● 전체 일러두기

1. 본 통계는 2016년에 전국 경찰관서에서 3종의 형사사건 범죄통계원표 (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에 근거하여 전산 입력한 자료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집계·관리하여 분석한 것으로, 범죄 개요 및 주요지표 범죄분석에 치안정책연구소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였다.
2. 통계표 산출의 기본 단위는 건수와 인원이다. 단, <재산피해 및 회수 상황>에서는 금액(만원)이 단위로 사용되었다. 건수는 발생원표를 토대로 한 ‘발생건수’와 검거원표를 토대로 한 ‘검거건수’로 구분된다. 인원은 발생원표에 기초한 ‘피해자인원’과 피의자원표에 기초한 ‘피의자인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피해자인원은 발생건수 기준 대표 피해자 1명의 정보를 기초로 집계되며, 피해자 인원 관련 통계 중 <신체피해 상황>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인원은 사건송치가 완료된 법인을 포함한 피의자의 수를 뜻하며, 범죄자특성 분석에서는 법인 피의자, 기소중지자 및 성별불상자가 제외되었다.
3.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므로, 범죄통계의 각 죄명분류는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과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속성을 제1분류원칙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2010 범죄통계」 이전에는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던 최종 대분류를 「2011 범죄통계」 부터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및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범죄 실태 파악 및 분석에 최종이 순차적으로 추가로 되어 2012년 398개, 2013년 419개, 2014년 459개, 2015년 463개, 그리고 2016년에 464개의 최종 소분류가 확정되었다.
4. 특별법 위반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특별법명에 따라 163개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2011 범죄통계」 부터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은 형법범에 통합하여 집계하였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9조의 강간 등 살인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강간 등 살인’ 항목에 통합하여 통계수치를 표기하였다. 또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특별법의 통계는 별도로 제시되었는데 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안보, 그리고 병역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 ‘폭력행위 등’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이 법을 위반하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폭처법 위반 사례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는 지능범죄의 ‘직무유기’로 분류하였다.
 6. 최종분류에 있어, 2010년 이전의 ‘강간’ 범죄는 2011년 ‘강간·강제추행’ 범죄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3년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강제추행등’의 4가지 유형의 중분류로 세분화 되었다. 이 중 ‘기타·강간·강제추행등’은 현재의 통계시스템 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례들을 모아 별도 분류한 것이다. 새로 신설된 중분류에 포함된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학대 범죄 등이 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항 위반행위와 2012년 12월에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풍속범죄”로,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범죄”로 분류하였다.
 7. 살인범죄의 통계는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기수와 미수 사이에 죄질 심각성 차이가 존재하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제시한 살인범죄(Homicide; Intentional Homicide)의 정의에 살인미수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8. 죄명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으로 약칭하였다.
 9. 다양한 범죄행위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2014년 제정)는 행위유형별로 분류되어 해당하는 각 범죄군에 추가되었다.
 10.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각각 2009년과 2015년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2016 범죄통계」에서는 지난 5년간의 범죄추세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통계 수치를 삭제 하지 않았다.
 11. 최근 6년간 (2011년~2016년) 죄명 및 최종(대분류-중분류-소분류) 변경사항은 부록의 「2011-2016」 죄명·최종 변경현황에 별첨하였다.

● 장별 일러두기

II. 범죄 발생 검거 및 처리

1.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

- 2016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입건하여 통계원표를 승인한 사건수를 의미한다.
-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 실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이 집계된 것은 아니며, 원표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발생 시점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비’

- 발생비는 절대적인 범죄발생 수준이 아니라 해당 인구를 고려한 상대적 범죄발생 수준을 의미한다.
- 「2015 범죄통계」까지는 발생비 계산식에서 해당년도의 인구수로 추계인구를 사용하였으나, 「2016 범죄통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였다.

3.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동년도의 발생건수로 나눈 것이다.
- 「2010 범죄통계」까지는 ‘검거율’, 「2011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4.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지역별통계’는 지방경찰청별 통계이다.

5.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검거인원’과 성별분류항목에서의 ‘불상’

-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 검거원표는 작성하지 않으나 피의자원표는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표에서 작성 가능한 항목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의 성별이 ‘불상’인 경우가 발생한다.

6. <검거자>의 ‘미상’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원표에 피의자를 검거한 사람 또는 기관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미상’으로 명명하였다.

Ⅲ. 범죄발생상황 관련 특성

1. <범죄 발생시간>의 ‘미상’

-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발생시간을 미상으로 표기한다.

2. <범죄의 발생지>의 ‘항목분류방식’

- 범죄의 발생지 항목은 총 86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크게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이들 지역 외의 행정구역상 ‘시’로 구분된 도시(78개 지역), ‘기타도시’ 및 ‘도시이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 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모든 도시와 ‘기타도시’는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을 의미한다.

- ‘도시이외’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행정구역상 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 창원시와 마산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창원시’로 표기하였다.

- <범죄 발생지>의 지역별 나열순서에 있어, 먼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8개 권역(‘도’ 단위)을 구분한 다음, 같은 지역의 도시들은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Ⅳ. 범죄자 특성

1. 범죄자특성 분석 시 성별 불상자, 기소 중지자, 법인 피의자는 제외되었다.

(2011년까지는 기소 중지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통계 비교 시 주의요망)

2. <범죄자 범행 시 연령>의 ‘14세미만’

- 소년범죄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촉법소년의 일부가 소년 범죄자에 포함되었다.

3. <범죄자 범행시 성별 연령>의 ‘미상’

- 범죄자의 성별은 구분이 가능하나,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이다.

4. <범죄자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의 ‘항목분류방식’

- 범죄자의 혼인관계를 큰 틀에서 기혼자, 미혼자, 그리고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 기혼자는 다시 ‘유배우자’, ‘동거’, ‘이혼’, ‘사별’로 구분하였다.

-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실부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로 구분하였다.

5. <범죄자 범행시 성별 정신상태>의 ‘항목분류방식’ 및 ‘미상’

- 「2011 범죄통계」까지는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미입력된 경우를 ‘정상’으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6. <범죄자 국적>의 ‘항목분류 방식’

- 현행 통계 입력과정에서는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국적을 입력하지만, 한국인이거나 국적을 모르는 경우 입력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입력 항목을 ‘한국’ 국적으로 집계하였다.
- 「2011 범죄통계」까지는 전체범죄자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다.

7. <범죄자 전과 여부 및 횟수>의 ‘전과’ 및 ‘미상’

- 전과란 피의자가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기록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을 받은 것은 전과에서 제외되었다.
- 기소로 송치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범죄자의 전과를 필수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불기소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2 범죄통계」 이후로는 이를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2011 범죄통계」 이전에는 미입력된 부분이 ‘없음’에 포함되었으므로 연도별 비교시 주의를 요한다.

8. <범죄자 범행시 전회처분 종류>의 ‘전회처분’ 및 ‘미상’

- 전회처분이란 본사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의미한다. 범죄자에게 진행 중인 직전 형사처분의 집행상황(수배중, 집행유예중, 보석 형집행정지중), 진행 중인 처분이 없을 경우, 과거에 받은 처분내용 중 가장 최근의 형사 처분내용(즉결심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형집행정료, 감호소출소 등)이 입력된다. 전회처분은 전과뿐만 아니라 전과에 미치지 못하는 형사처분(기소유예, 보호처분 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범행시 전회처분은 송치의견이 기소인 경우에만 필수입력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불기소 시에는 미입력 되기도 한다. 미입력 된 경우 「2011 범죄통계」 이전까지는 ‘없음’으로 집계되었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되었다.

9. <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의 ‘재범’

- 재범의 의미는 본 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이 결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집계된 것이다.

-
- ‘전과’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 ‘재범’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범죄자 수와 재범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10. <범죄자 공범관계>의 ‘미상’

- 「2011 범죄통계」까지는 공범관계가 미입력된 경우 ‘단독범’에 포함시켜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 통계 부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V.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성별 연령>의 ‘미상’과 ‘불상’

- 피해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 ‘미상’,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표기하였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주요 피해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VI. 범죄자 유형

1. 범죄자 정의와 유형 분류기준

- 범죄자 유형에서 사용된 ‘범죄자’는 형사 피의자를 뜻하며 수사 중인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 미성년범죄자는 범행당시 연령이 만18세 이하 피의자를 의미한다.
- 학생범죄자는 범행당시 직업이 학생(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 공무원범죄자는 범행당시 직업이 공무원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 전과범죄자는 본 사건 이전에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의미한다.
- 정신장애범죄자는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신이상, 정신박약, 또는 기타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관에 의해 판단된 피의자를 의미한다.
- 외국인범죄자는 범행당시 외국국적을 가진 피의자를 의미한다.
- 고령범죄자는 연령이 65세 이상인 피의자를 의미한다.

2. 공무원 소속기관 분류의 변경

- 「2011 범죄통계」와 「2012 범죄통계」에서는 <공무원범죄자 소속기관>의 ‘국가공무원’ 범주 내에 ‘해양수산부’ 항목을 제외하였으나, 「2013 범죄통계」부터는 ‘해양수산부’ 항목을 다시 추가하였다.
- 「2015 범죄통계」에서는 2016. 7. 기준으로 개편된 국가기관 편제에 맞춰 소속기관을 분류 하였으며, 기존 부서의 업무가 분리되어 부처가 다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예를 들어,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에 출범하였다).